

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 
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양해각서

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<sup>1)</sup>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(이하 “협정”)의 당사국들은 아래 사항을 양해하였다.

(가) 제1조(정의)에 대하여,

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1조거항(1)호의 “수익적 소유”라는 문구가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(1) 필리핀이 1987년 필리핀 헌법(필리핀 공화국 헌법), 개정 연방법 제108호, 즉 안티더미법(일정 권리, 특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), 개정 베타스 팜반사 빌랑 68(필리핀 기업법), 공화국법 제386호(필리핀 민법을 규정하고 제정하기 위한 법) 및 공화국법 제8179호(공화국법 제7042호를 개정하고, 기타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자유화하기 위한 법)와 불합치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허용함.

(2) 베트남이 민법 제33/2005/QH11호(2005.6.14일자), 기업법 제60/2005/QH11호(2005.11.29일자), 투자법 제59/2005/QH11호(2005.11.29일자) 및 유가증권법 제70/2006/QH11호(2006.6.29일자)와 불합치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허용함.

(나) 제13조(일반적인 예외)에 대하여,

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13조라항과 각주 7 하의 조세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추가적인 협상의 대상임을 양해한다, 그리고,

(다)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항(금융건전성 조치, 환율 및 금융 안정성)에 대하여,

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, 이 협정에 대하여, 금융건전성 조치, 환율 및 금융 안정성에 관한 제2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상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취하는 것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.

---

1) 당사국들은 태국 왕국이 의회의 절차를 종료하면 이후에 서명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.

이 양해각서는 서비스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김종훈  
통상교섭본부장

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

림 족생  
외교통상부 제2장관

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

참 프라시디  
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

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마리 엘카 팡제스투  
통상장관

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남 비야케스  
상공장관

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

라피다 아지즈  
국제통상산업장관

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

우 소에 타  
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

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피터 B. 파빌라  
통상산업장관

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림 흥 키앙  
통상산업장관

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부 휘 황  
통상장관